

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67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1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(안)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17년도 평창군기금조성 규모는 총 6개 기금 20,7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,012백만원이 증가하였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| 기금명 | 2016년도말 조성액 [㉠] | 2017년 운용계획 | | 2017년도말 조성액 [㉡] (d)=(a)+(b)-(c) | 증감 [㉢] (e)=(d)-(a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수입 [㉣] (b) | 지출 [㉤] (c) | | |
| 합계(6건) | 19,718,407 | 2,083,606 | 1,071,189 | 20,730,824 | 1,012,417 |
| 통합관리기금 | 8,149,432 | 112,700 | 114,009 | 8,148,123 | △1,309 |
| 사회복지기금 | 6,426,767 | 832,731 | 84,900 | 7,174,598 | 747,831 |
| 체육진흥기금 | 3,821,257 | 654,515 | 30,000 | 4,445,772 | 624,515 |
| 식품진흥기금 | 112,281 | 40,773 | 42,280 | 110,774 | △1,507 |
| 재난관리기금 | 1,208,670 | 416,487 | 800,000 | 825,157 | △383,513 |
| 옥외광고정비기금 | 0 | 26,400 | 0 | 26,400 | 26,400 |

※ 수입 :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/ 지출 :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

※ 용자금은 지출 ㉤에 포함하여 계상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이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조례**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